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 정 2016. 08. 개 정 2016. 11. 개 정 2017. 07. 개 정 2018. 02.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 및 운영하는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'대학 발전계획'이라 함은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며, 건학 이념을 실현하고,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, 목표, 전략과제, 추진체계, 예산 등을 말한다.(개정 2017.07.10.)

제 2 장 운영

제3조(조직) ① (삭제, 2018.02.08.)

- ② 대학 발전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실행하는 한편 그 성과를 확인하여 대학의 정책과 제도, 교육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를 두며, 별도로 대학발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대학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는 대학발전위원회가 총괄적으로 주관 및 관리하며, 기획처는 대학발전위원회의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활동을 지원한다(신설 2018.02.08.)
- ④ 대학발전위원회, 대학발전자문위원회에 관한 구성 및 기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16.11.28. 2018.02.08.)
- **제4조(계획 수립)** ① 대학 발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.(개정 2017.07.10, 2018.02.08)
 - 1. 환경분석(외부환경분석 및 내부여건분석)
 - 2. 구성원 의견 수렴
 - 3. 대학 비전 및 목표
 - 4. 인재상 및 교육목표(핵심역량)
 - 5. 전략과제 및 실행사업
 - 6. 비전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및 재정운영계획
 - 7. 기타 대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
 - ② 대학 발전계획은 대학의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처가 계획안을 수립하되, 세부 실행사업은 각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이 수립하여 제안할 수 있으며, 기획처는 각부서별 제안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계획안을 수립하여 대학발전위원회에 보고한다.
 - ③ 기획처에서 수립한 발전계획안은 공청회 의견 조정과 대학발전위원회 심의, 교무위원회 심의·의결

- 를 거쳐 결정하며,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다.(개정 2017.07.10. 2018.02.08)
- ③ 수립된 발전계획을 통해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에게 공유한다.
- 제5조(계획의 추진 및 관리) ① 대학 발전계획의 실행 및 관리, 성과 점검 등에 관한 실무는 기획처가 주관하며, 중간점검 결과를 대학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, 대학발전위원회는 사업의 보완 및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.(개정 2017.07.10. 2018.02.08)
 - ② 기획처는 매년 학과 및 행정부서와 협의하여 대학 발전계획 수립과 이행에 관한 연도별 성과목표 및 사업 계획을 세워 대학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(개정 2017.07.10. 2018.02.08)
 - ③ 각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은 대학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실행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02.08)
- 제6조(평가) ① 고등교육평가원은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매년 대학 발전계획의 연차별 추진성과를 평가하며,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연차별 결과보고서(자체평가보고서)를 대학발전위원회에 보고하고, 대학발전위원회는 연차별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여부를 결정한다.(개정 2016.11.28.)
 - 1. 대학 발전계획 전략과제별 성과지표
 - 2. 각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의 연차별 성과목표
 - 3. 구성원 만족도 조사
 - 4. 기타 대학발전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
- **제7조(개선 및 환류)** ① 전략과제별 실행사업 이행에 대한 연차별 결과보고서(자체평가보고서)는 대학구성원에게 공지한다.
 - ② 각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은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차년도 세부 실행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, 기획처는 각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발전위원회에 보고한다.(개정 2017.07.10.)
 - ③ 대학발전위원회는 차년도 실행사업에 관한 개선 또는 보완 계획을 심의·의결하며, 대학 (중장기) 발전계획에 반영한다.(개정 2017.07.10.)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